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094호
- 나. 발 의 자 : 김규남 의원(찬성자 29명)
- 다. 발의일자 : 2023년 8월 14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은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정하여 이 지역 내의 건설 공사 시행이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조례 제19조제5항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두고 있음.
- 이에 제19조제5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문화재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의 규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추상적 조항을 삭제함(안 제19조제5항).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여 외부지역까지도 보존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제를 삭제하여 문화재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한 규정 삭제(안 제19조제5항)

-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 범위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④(생략) ⑤ <u>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면 제4항을 준용한다.</u>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④(현행과 같음) <u><삭제></u>

- 「문화재보호법」 제13조는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조례(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지정문화재에 대해 보존지역 지정 범위를 정하고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보호구역의 외곽경계 100미터 이내
- 시지정문화재의 경우: 보호구역의 외곽경계 50미터 이내

- 또한, 현행조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에 직접 접해있는 지역 등에 대해 문화재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인지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더구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행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 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제12조)을 근거로 하며, 문화재는 국가문화재(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시지정문화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문화재보호법」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 서울시는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하에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음.
- 현행조례 제정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 범위에서 건설공사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 사례가 전무해 사문화된 조항으로, 규제 개선 차원에서 이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의안번호
1094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김규남 의원	제안일자 2023.8.14.	소관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개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1항부터 제4항은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정하여 이 지역 내의 건설공사 시행이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 제19조 제5항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 <p><주요 입법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의 규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추상적 조항인 동 조례 제19조제5항을 삭제함 				
추진경과	○ 2023.8.14.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 서 검토 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규남 의원 관심사항(문화재 주변부 규제 완화) - 유사 건으로 의안번호 486호('23.2.6., 상임위 가결, 절차적 위법성 등의 사유로 본회의 상정 보류)를 발의한 바 있음 ○ 집행부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 조항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 특별히 조례에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선 차원에서 삭제에 동의하는 바임 				
대응방안 상 임 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팀장	이준봉(☎2133-2612)	담당	차지연(☎2133-2612)